

청렴韓 보건복지부



보 건 복 지 부



수신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
(경유)

제목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의료광고 판단 기준 질의 회신

1.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제2024-11(2024.12.31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의료광고 판단 기준 질의에 대한 우리부 검토의견을 아래과 같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질의 내용

- 1) 블로그 내 의료광고 게시 관련, '전체 블로그'를 1건의 의료광고로 간주해야 하는지, 또는 '블로그 내 개별 게시글'을 각각의 의료광고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.
- 2) 블로그 게시물 등 SNS 및 인터넷 매체 내 "의료광고"와 의학정보 게시글 등 "의료광고 외 내용" 판단 기준.
 - ※ ①의학정보(통상적인 치료정보, 질환의 정의, 원인, 증상)로만 구성 혹은 의학정보와 함께 '의료기관 명칭, 의료인 성명'이 기재 ②진료, 환자와 관련 없는 의료인·의료기관에 대한 정보(예 : 내부교육·행사, 학회 활동, 의료기관(의료인) 동정, 인상, 소회 등), ③게시 형식상 편지, 일기 등

나. 답변 내용

-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별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.
 - 블로그 등은 의료광고가 이루어지는 매체에 불과하고, 의료광고가 게재된 블로그라 하더라도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도 존재할 수 있어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, 해당 매체에 게재된 개별 게시물을 「의료법」 상 의료광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.
 - 기존 승인된 의료광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심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새로이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*하다는 점을 고려하면, 블로그별로 심의하더라도 게시물이 추가될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.
 - * 의료광고심의기준('19.11.19., 의협·치협·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) p.30 : "기존 승인된 광고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, 발췌 등 임의 변경하여, 심의받지 않고 광고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허하며, 이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심의필 광고를 불승인 처리할 수 있다."

- 일반적인 의학정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단순 근황 등을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「의료법」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.
- 다만, 개별 게시물이 의료광고인지에 대한 판단은 목적, 내용, 게시 형태, 타 게시물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주무관	이재혁	서기관	박준형	보건의료정책과 전결 2025. 1. 16.	장	성창현
협조자						
시행	보건의료정책과-424			접수		
우	30113	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	보건의료정책과	/	http://www.mohw.go.kr	
전화번호	044-202-2409	팩스번호	044-202-3933	/	abb8600@korea.kr	/ 비공개(5)